

의안번호	2210605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5. 7. 1.
추 계 번호	25A301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억 4,900만원, 2032년 3억 7,9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1억 6,500만원(연평균 4억 3,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270	—	—	—	—	270	54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등(안 제8조)	11	11	11	11	11	55	11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368	368	368	368	368	1,840	368
합 계	649	379	379	379	379	2,165	43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등)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6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 소속으로 실무추진단을 둔(제7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9조(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탄소중립 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원사업 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3. 중소기업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한 설비 도입·개선 지원 4.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5.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6. 탄소중립 관련 지역 사회, 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 7.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및 포상 8.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지원	
5	안 제14조(자금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5조(세제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7조(시급업종 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이 시급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8조(탄소중립 협력 지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조성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 4. 탄소중립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5.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등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9	안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	안 제8조(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등)	○	—
3	안 제9조(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경우 ISP 수립 이후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ISP 수립 365백만원, 시스템 구축 3,800백만원, 시스템 운영 500백만원(연간)으로 추산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13조(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안 제14조(자금 지원)	X	
6	안 제15조(세제 지원)	X	
7	안 제17조(시급업종 등 지원)	X	
8	안 제18조(탄소중립 협력 지원)	X	
9	안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단위: 억원)

내역사업명	‘23년	‘24년	‘25년
I. 진단·컨설팅	—	24	74
기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	24	44
기후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	—	30
II. 설비	84	168	190
기후 탄소중립 설비투자	54	138	140
일반 제조혁신 기반 구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30	30	50
III. 사업화	273	198	231
일반 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118	118	118
기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화)	152	77	80
기후 탄소중립 사업화	—	—	30
일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탄소중립)	3	3	3
IV. 금융투자	862	1,467	1,588
중진 Net-Zero 유망기업자금	462	967	938

내역사업명		`23년	`24년	`25년
중진	사업 전환자금 (탄소중립 용자)	400	500	550
중진	모태조합 출자 (기후테크 펀드)	—	—	100
V. 기반조성		713	356	279
지특	규제자유특구 (저탄소·모빌리티, 수소 등)	504	221	144
일반	그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그린 스타트업 타운)	209	135	135
VI. 인식제고		430	242	242
중진	연수사업 (전체)	427	239	238
일반	ASEIC 운영 (회원국 에코 이노베이션 확산)	3	3	4
VII. R&D		260	99	45
기후	Net-Zero 기술혁신개발	103	58	26
기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R&D)	157	41	19
합 계		2,622	2,554	2,6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인 2억 7,000만원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 시행계획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므로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8년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270	—	—	—	—	270	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등(안 제8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11명, 회의 개최 횟수는 분기당 1회로 가정함
 - 안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위원의 수는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 회 등(안 제8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및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함¹⁾

- 실태조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유사 실태조사 사례인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 조사비용인 3억 6,800만원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 비용을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8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368	368	368	368	368	1,840	3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1)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ISP 수립 365백만원, 시스템 구축 3,800백만원, 시스템 운영 500백만원(연간)으로 추산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